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34
----------	-----

2016. 2. 4.(목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양섭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6년 1월 15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월 26일

(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 설명자 : 이양섭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 근거가 되는 「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이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·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, 기존에 설치된 ‘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’가 ‘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’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.

- 또한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‘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’⇒ ‘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’로 변경(안 제4조)
- 「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⇒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(안 제5조, 제7조)
- 별지서식 중 ‘주민등록번호’를 ‘생년월일’로 수정

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오성일)

- ‘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 근거가 되는 「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이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·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, 기존에 설치된 ‘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’가 ‘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’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이고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”를 “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”로 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「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「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를 “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8조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시·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”를 “시·군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5항에 따라 읍·면·동에 설치된 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
<별지 제1호서식>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~ 제3조(생 략)</p> <p>제4조(지원계획 수립 등) 도지사는 경영안정지원 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에 설치된 <u>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</u>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제5조(경영안정지원) 도지사는 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 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비 재배농업인으로서 「<u>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</u>」 제5조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최대 지원범위는 5만제곱미터까지로 한다.</p>	<p>제1조 ~ 제3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지원계획 수립 등) ----- ----- ----- <u>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</u>-----.</p> <p>제5조(경영안정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「<u>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2. (생략)</p> <p>제6조(생략)</p> <p>제7조(지원 신청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「<u>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</u>」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8조(대상 선정) ① 경영안정 지원대상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<u>시·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</u>(이하 “<u>심의회</u>”라 한다.) 심의를 거쳐 시장·군수가 선정한다. 다만, 제5조 제2호와 같이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지원 신청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「<u>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</u>」 제8조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8조(대상 선정) ① ----- ----- <u>시·군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</u> 또는 「<u>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</u>」 제8조 제5항에 따라 읍·면·동에 설치된 <u>심사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<별지 제1호서식>

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신청서

신청인	성명		남·여	생년월일		
	주소			전화번호 (휴대폰)	()	
신청 농 지	농지소재지					
	읍·면·동	리·통	지번	면적(m ²)	소유자 (자, 타, 공유)	비고
입금계좌		은행	계좌번호	예금주()		

「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며,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인)

읍·면·동장	
확인	

시장·군수 귀하

첨부
서류

1.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.
2. 농지 소유주 확인서 1부.
3. 임대차계약서 1부.

관 계 법 령

□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[시행일 : 2015-01-01]

제8조(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)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·면장 또는 동장(이하 "읍·면장"이라 한다)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경작농지가 같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내의 2개 이상 읍·면·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읍·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읍·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,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⑤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읍·면·동에 심사위원회를 두며,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